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기부 가능한 목적,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에 따른 반영(안 법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서식 제1호, 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개정 전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나. 기부금품 모집목적 규정(안 제1조의2)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육성·지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규정

다. 기부금품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규정

라. 기부의 날·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4)

기부의 날 등에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기부활성화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

마.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게시·제공할 사항 외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을 게시·제공토록 규정

바. 공개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규정

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시스템 구축·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할 정보의 범위, 정보 공개 및 제한 사항과 시스템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3)

사업의 특성, 법률·행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등록청의 승인을 거쳐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자.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간소화(안 제3조, 제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및 모집·사용명세 보고 등을 등록청에 제출

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
차. 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서류 및 별지서식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9호)
기부금품 범위에 주식이 추가되어 등록시 첨부서류에 주식계좌 사본을 추가하고, 별지서식에 주식 등 유가증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1.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부금품 모집 목적) 법 제2조제1호라목8)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지원
2.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3.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4.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목적 및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목적 이외의 공익 목적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제1조의4(기부의 날·기부주간 행사 및 포상)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의 날을 기념하고, 기부주간 행사의 운영 및 포상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기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행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자 등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의3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을 “제1조의2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을 “제1조의2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 예금통장 사본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 사본

제5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기간
2. 사용기한
3. 모집목표액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제17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모집·사용계획서
2. 법 제4조제4항의 모집등록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4.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배분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연장은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연장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

사 등의”를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 하며,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 사본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물품”을 “물품 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금융회사, 증권사 등의 예금·주식”으로 하며, 같은 첨부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기부물품”을 “기부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물품”을 “물품 등”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 및 별지서식 제5호, 제5호의2, 제8호,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 모집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 「기부금품 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의2(기부금품 모집 목적) 법 제2조제1호라목8)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 지원</u> 2. <u>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u> 3. <u>저출생 · 고령화 및 인구감소 · 지방소멸 대응</u> 4. <u>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 화</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 한 목적 및 법 제2조제1호가

<신 설>

목부터 라목까지의 목적 이외
의 공익 목적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

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
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은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
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

<신 설>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제1조의4(기부의 날·기부주간 행사 및 포상)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의 날을 기념하고, 기부주간 행사의 운영 및 포상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생략)

5. 그 밖에 기부에 대한 범국민
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
동 및 행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자 등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사 등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의3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에 관한 법률」 -----

1. -----
 -- 제1조의2제5호-----

2. (현행과 같음)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 4. (생략)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③ ~ ⑤ (생략)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

--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조의2제5호-----

6. 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 예금통장 사본

7.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 주식계좌 사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

---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

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

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모집·사용

계획서

2. 법 제4조제4항의 모집등록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품 처분·사용 계획서

4.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

품 모집 완료보고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공

<신 설>

개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배분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생략)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u>제출</u>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생략)	② ----- ----- ----- ----- ----- <u>제출하거나 기</u> <u>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181